

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17차 조정회의 개최

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, 수리 및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협회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신무성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3월 28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하였다.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사안과 그 처리 현황은 다음과 같다.

◆ 조정종료(취하)

- ▶ (주)한국알에프 등 26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
 -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중재로 양당사자간 합의 후 신고인들의 신고취하서 제출로 조정절차를 종료함.

◆ 조정불성립

- ▶ 동아중공업(주) 등 4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
 - 피신고인 및 신고인이 조사에 불응하고 조정안 수락 거부, 조사불용, 사건이첩 요청 등의 사유로 조정이 불성립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 사건이첩.

◆ 조정불개시

- ▶ 베이비산업 등 4개 업체에 대한 분쟁 건
 - 당사자 요건결여 및 하도급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불개시 처리함.